

auri brief.

● 건축도시공간연구소

No. 147

2017. 3. 30

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

서수정 선임연구위원, 염철호 연구위원, 여혜진 부연구위원

| 요약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으로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월세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 추진
-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추진되는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이라는 한계로 인해 입주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거서비스의 질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
- 기업형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는 사업자가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 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유형, 서비스 대상이 불분명하여 민간이 제안한 주거서비스의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
- 이에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, 주거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품질 확보를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 방안 마련

| 정책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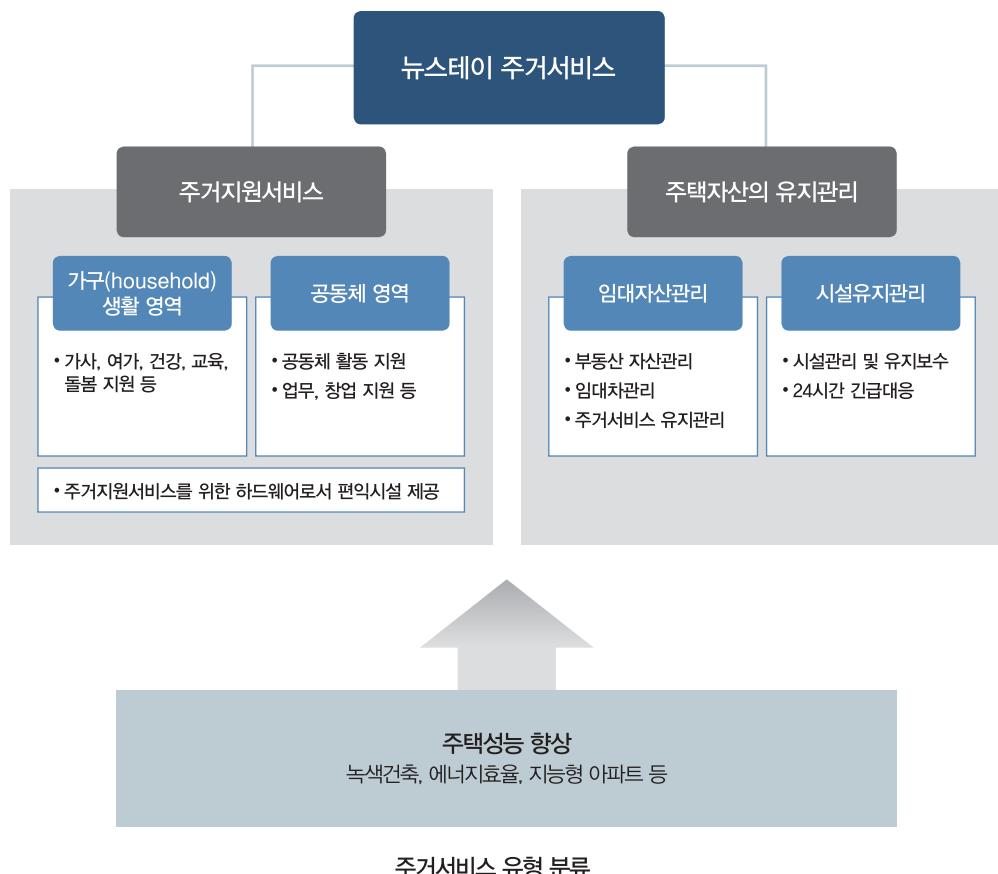
- 뉴스테이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목적으로 인증대상 및 절차, 인증기준, 평가항목을 제시
- 주거서비스 인증기준은 주거서비스 특화전략, 입주자 참여 주거서비스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, 임대주택 운영 및 시설관리 계획, 주택성능 및 품질 향상 분야로 제시
-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(주거서비스인증) 신설 방안 및 주거 서비스 인증운영지침 제시

주제어 | 뉴스테이, 기업형임대주택, 주거서비스, 주거서비스 인증제도

1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도입의 의미

■ 주거서비스 개념 및 유형 설정

- 주거서비스는 가구(household)라는 소비자가 주택이라는 물리적 매개체를 통해 거주 행위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재화(service)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적 재화와 사회적 재화를 모두 의미(윤주현 외, 2005:17)
- 뉴스테이에서 주거서비스는 이러한 주거서비스의 일반적 개념에 따라 ‘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시설, 보육시설,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익시설을 비롯하여 일상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가사, 여가, 보육·돌봄 등 생활지원, 공동체 활동 지원, 주택 성능확보 및 유지·관리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’으로 정의할 수 있음
-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개념 정의에 따른 주거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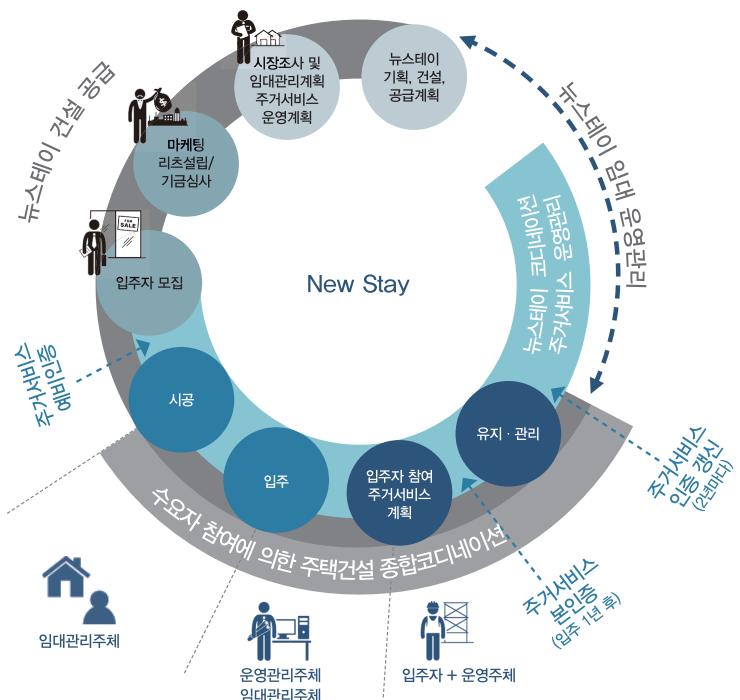
■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도입의 의미

- 주거서비스의 질 확보를 통한 뉴스테이 브랜드 가치 창출
 - (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주거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촉매 역할) 맞벌이가구, 1인 가구, SOHO가구, 은퇴자 등 다양한 주거수요 계층에 대응하여 문화·교육·복지 등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
 - (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)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유지·관리서비스와 함께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도하고 뉴스테이 브랜드 가치 창출
 - (입주자 참여 주거서비스 운영을 통한 뉴스테이 공동체 활성화) 입주자가 서비스 수요 주체이자 공급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재능기부형 주거서비스 운영,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한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도모로 건강한 주거문화 창출
 - (지역주민과 서비스 시설 공유를 통한 공공성 확보) 근린생활시설,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국·공립어린이집, 보육·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에게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저렴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부여
-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임대주택 관련 산업 활성화
 - (임대주택 관리 및 주거서비스 산업 활성화) 임대주택 자산관리 및 운용, 주택유지 관리 서비스, 거주자의 생활지원 서비스 등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통한 주거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
 - (소규모 지역업체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과 상생) 세탁, 배달, 식료품점 등 지역업체와 연계한 생활지원서비스 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공생
 - (공유경제 기반 마련을 통한 뉴스테이 일자리 창출) 카셰어링,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 센터와 연계한 코워킹 공간 마련, 입주민 협동조합 지원, 공동구매 지원 등 공유경제 활동 지원을 통한 창업과 주민 일자리 창출 등 뉴스테이 입주민 경제활동에 기여

2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목적

■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

- 인증제도는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되는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주거서비스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단지별 주거서비스 격차를 줄여 뉴스테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필요
- 인증제도는 뉴스테이 사업자가 계획하는 주거서비스가 입주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그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, 지속적으로 주거서비스를 유지 · 관리한다는 약속 이행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
-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자금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사업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 · 공립어린이집,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등을 제공 · 운영함으로써 공공 기여 차원의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필요
-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발 · 건설, 분양, 임대 · 관리 분야에 국한되었던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 산업에서 벗어나 거주자의 생활 지원까지 연계하는 주택공급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



주거서비스를 통한 부동산산업의 선순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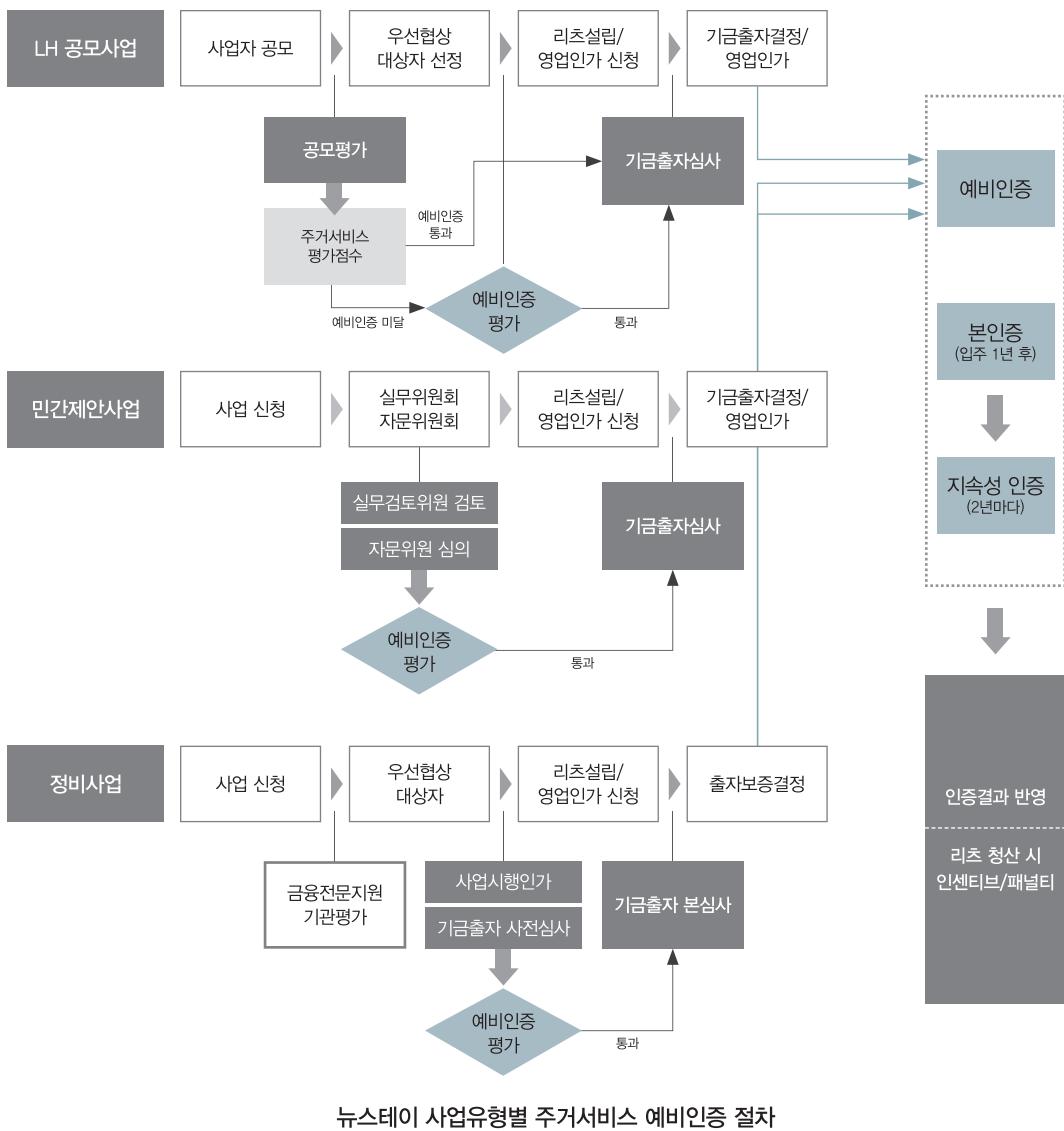
■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

- 주거서비스 인증평가를 위한 주거서비스 계획수립 가이드라인과 평가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임대주택 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
- 뉴스테이 사업의 선발주자가 제시하는 주거서비스 인증평가를 통해 선도모델을 창출 함으로써 후발 주자에 대한 트리클 다운(Trickle Down) 효과를 기대
-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뉴스테이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공실률을 줄여 효율적인 주택 재고 관리에 기여

3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운영 방안

■ 인증대상 및 절차

- LH 공모사업 · 민간제안사업 · 주택재개발사업 등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하되, 주거용 사업에 한정하며 단지별로 인증
 - 인증대상은 리츠 설립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실질적 시행주체인 임대주택 공급주체 또는 임대주택 자산 운영 · 관리주체 중 대주주인 사업주체
 - 임대주택 공급주체와 임대 운영 · 관리주체가 리츠 설립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경우, 양 주체 모두를 대상으로 인증
- 주거서비스 인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심사 이전에 인증평가를 시행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여 시행
 - (예비인증) 기금출자심사 이전에 인증평가를 거쳐 예비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점수를 받은 대상사업만 기금출자 심의에 상정
 - (본인증: 주거서비스 지속성 인증) 입주 1년 이후 주거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지속 가능성 인증, 이후 2년 단위로 인증 갱신



■ 인증평가 방법 및 기준

- (인증평가 방법) 기금출자심사 대상 사업자별로 주거서비스 평가를 시행하되, 리츠 회사가 복수의 사업대상지를 신청할 경우 동일 리츠사업 안에서 각 사업대상지별로 평가
 - 하나의 리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별 평가결과가 모두 인증평가 기준 점수를 통과해야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부여
- (인증평가 항목) 평가항목은 주거서비스 유형에 따라 주거지원서비스, 자산 및 시설 관리, 주택성능 향상 부분으로 나누되, 핵심 항목과 일반 항목으로 구분하고 핵심 항목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받기 위한 관문 성격으로 운영

주거서비스 영역별 평가내용

영역	평가내용
주거서비스 특화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주계층에 따른 주거서비스 특화전략의 타당성 • 주거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충실성 • 주거서비스 시설계획의 정합성 및 적정성
입주자 참여 주거서비스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주자 참여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• 공동체 활동 지원 계획 • 임차인 대표회의 등 설립 지원 • 주거서비스 모니터링 계획
임대주택 운영 및 시설관리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대자산 및 시설관리 운영계획의 적정성 • 24시간 응급대응서비스 체계 마련의 구체성
주택성능 및 품질 확보	녹색건축인증계획에 따른 등급으로 평가점수 부여

- 평가기준은 항목별 변별력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표에 따라 3~5점 척도로 구성¹⁾
 - (임대주택 입주자 개인의 주거서비스 질 확보) 분양주택과 비교해서 차이 없는 주거지원서비스 제공
 - (뉴스테이 단지 공동체 형성) 아파트 공동체 형성을 통한 임대주택 거주자들 간의 상생구조 마련으로 충간소음, 쓰레기 처리 등에 따른 단지 내 분쟁 방지
 - (뉴스테이 단지를 통한 지역 상생 유도) 지역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뉴스테이 단지 입주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

주거서비스 세부평가 항목

구분	핵심 항목(60점)	일반 항목(40점)
입주자 개인의 주거서비스 질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녹색건축인증 •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• 긴급대응서비스 및 운영체계 마련 • 카셰어링 주차공간 설치 및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 전략의 타당성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 • 임대 및 시설관리 운영계획의 구체성 • 기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특화서비스계획과 운영 방안
단지 내 공동체 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• 주거지원코디네이터 운영 • 재능기부자 우선 입주 및 운영지원 •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설치(동아리방, 주민카페, 회의실, 코워킹 스페이스, 협동조합 운영 등 공유 경제 활동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) 및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거서비스 시설계획과 프로그램의 정합성 및 적정성 • 입주자참여 모니터링 계획의 구체성
지역 상생 유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 건강증진시설 설치 및 운영 • 국·공립어린이집 유치 또는 보육시설 설치·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개방형 프로그램 운영 및 구체성

1) 세부평가 항목 및 평가 시 주안점은 서수정·염철호·여혜진(2016), 「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」, 건축도시공간연구소, pp.136~140 참조

■ 인증기준 및 인증결과 활용 방안

- (예비인증기준)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, 필수항목 60점 중 40점 이상이면 예비인증 부여
 - 3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는 총점 60점 이상, 필수항목 30점 이상
 - 본인증은 평가점수에 따라 인증등급 부여
- (인증점수 산정방식)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대, 최소 점수를 제외한 평균값으로 평가점수 산정
 - 녹색건축인증은 녹색건축인증평가를 받도록 하고 예비인증에서는 인증평가계획에 따른 점수만 부여
- (인증결과에 대한 인센티브, 패널티) 입주 후에 시행하는 주거서비스 본인증 후, 주거서비스 지속인증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리츠청산 시점에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

■ 본인증 운영 방안

- 입주 1년 후 리츠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인증평가를 신청하면 인증기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
 - (서면평가) 예비인증 평가항목에 대한 이행 점검과 함께 임대주택 관리, 공동체 활동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시행
 - (현장평가) 관리주체 면담, 임차인대표회의 면담, 주거서비스 운영주체 면담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여 인증
- 본인증 이후 2년 단위로 주거서비스 지속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,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주거서비스 인증을 취소
 - 2년 단위로 받아야 하는 주거서비스 인증은 본인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며, 현장 평가 비중을 서면평가 비중보다 높게 적용

4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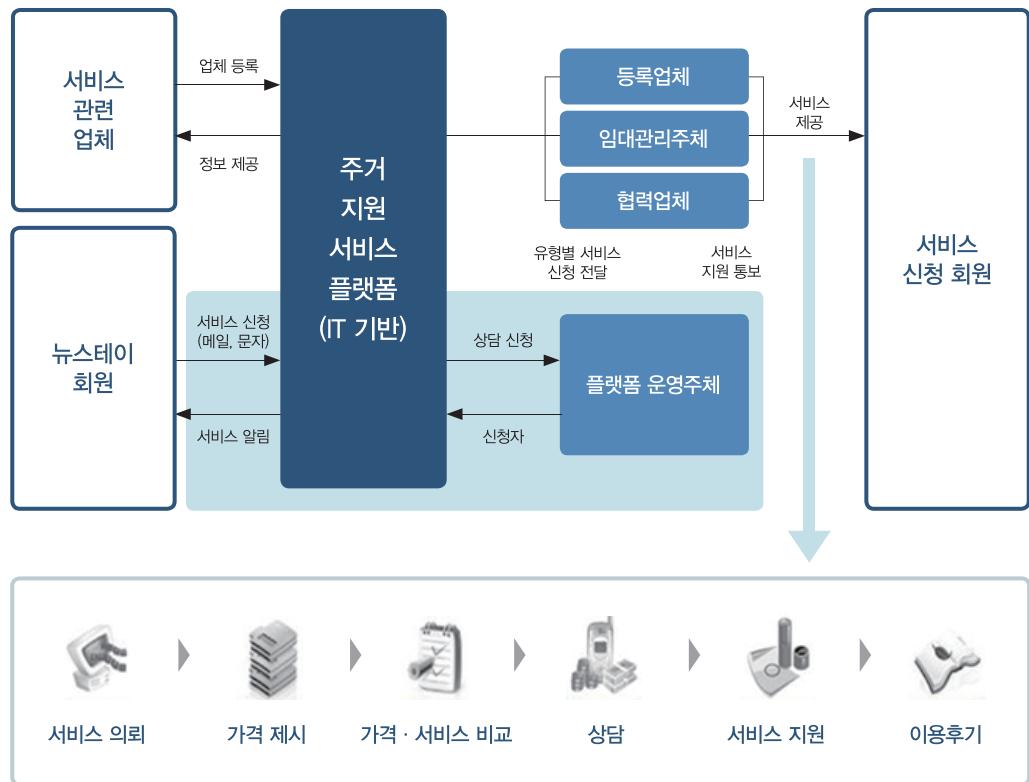
■ 주거서비스 운영 방안

- (서비스 유형별 전문기관 운영) 주거서비스는 서비스 유형과 내용에 따라 뉴스테이 임대 관리주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업체, 지역 소재 업체, 방문서비스 수행 주체 등 주거서비스 관련 산업과 연계·협력하여 운영 가능
 - 뉴스테이 임대자산관리는 대부분 리츠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위탁·관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, 주거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각 업체의 역할 분담 제시 필요

21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상 자산관리 운영계획

서비스 유형	자체운영	전문업체 위탁	자체운영 + 전문업체 위탁	미정	계
임대자산관리	4(19.1%)	15(71.4%)	0(0.0%)	2(9.5%)	21(100.0%)
시설관리	3(14.3%)	15(71.4%)	1(4.8%)	2(9.5%)	21(100.0%)

- 주거지원서비스 프로그램 중 국·공립어린이집, 헬스케어 등은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지역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거나 근린생활시설에 전문운영기관을 유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대상지 특성에 따라 운영 방안 마련
- (입주자 참여 주거서비스 운영) 입주자가 단지 공동체 활동의 일환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하드웨어 공급(공동육아 지원, 카셰어링, 코워킹 스페이스, 협동조합 운영사무실 등) 또는 온라인 서비스 기반 지원
- (주거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 연계) 뉴스테이 사업대상지별 공급규모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기본적인 유지관리서비스나 입주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입주자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최적의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리츠 차원의 플랫폼 구축
 - 리츠가 주거서비스 운영을 위한 콜센터·콘택트센터·네트워크센터로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지역 소재 또는 관련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수요자 요구에 따라 서비스 선택 제공
 - 주택 유지·관리를 위한 24시간 긴급대응서비스의 경우, 지역 보수업체와 연계하여 뉴스테이 입주자와 서비스 공급주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



주거서비스 플랫폼 운영 방안

※ 출처 : 서수정 · 임현성 · 임강륜(2010), 「해피하우스 정책지원방안 연구」, p.217 참조 재구성

- (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운영) 향후 주거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 · 운영하기 위해서 리츠 단위로 주거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
 -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주거지원 프로그램 기획, 입주자 선정 이후 입주자 의견 수렴을 통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보완, 입주 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, 임차인 중 리더 발굴을 위한 공동체 교육 지원,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커뮤니티시설 공간 운영 기획 · 관리(시설 자체 관리는 시설관리 분야에서 담당), 주거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등 수행
 -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서비스 공급계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향후 운영을 종합적으로 조정,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주거서비스 운영 도모
 - 주거서비스는 뉴스테이 자산관리를 위한 매니지먼트 분야와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기획,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

- 매니지먼트는 리츠 차원의 자산관리운영회사와 시설관리 전문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주거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가 참여는 미흡한 상황
- 따라서 뉴스테이 사업에서도 주거서비스 특화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단지별로 운영하되, 단지 규모에 따라 상주 또는 순환 지원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는 단지 규모에 따라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도 있으며, 지역에 있는 공동체 지원센터,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전문조직에 위탁 운영도 가능

■ 관련 제도 개선 방안

- 현재 기업형임대주택은 ‘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’ 제82조(주거서비스 활성화)에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마련과 이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
- 이에 근거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주거서비스 인증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(주거서비스 인증) 조항을 추가하고, ‘주거서비스 인증을 위한 업무지침’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안)

관련 근거	내용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 (주거서비스 인증) 신설	<p>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한다.</p> <p>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 기관을 지정하고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주거서비스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1. 인증대상</p> <p>2.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</p> <p>3. 인증유효기간</p> <p>4. 수수료</p> <p>5.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,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</p> <p>6. 인증 받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</p> <p>7.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</p>

주거서비스 인증을 위한 업무지침(안)

관련 근거	내용
주거서비스 인증을 위한 업무지침 마련	<p>제1조(목적)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(적용대상) 기업형임대주택 기금출자 신청 리츠사업자 제3조(운영기관의 지정절차 및 업무)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, 운영 기관의 업무 제4조(인증기관의 지정) 인증기간 지정 공고, 인증기관 자격, 인증기관이 작성해야 하는 업무 처리규정 포함내용 등 제5조(예비인증신청)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 중 기금출자 신청, LH공모사업 신청자 제6조(예비인증심사 및 기준) 심사위원회 구성, 인증기준(예비인증 기준 70점 이상) 제7조(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) 예비인증서 유효기간은 입주 1년 본인증 받기 전까지 제8조(재심사 요청) 인증운영위원회에 재심사 요청 제9조(예비인증 받은 대상의 사후관리) 예비인증 고시 제10조(인증수수료) 제11조(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</p> <p>별표 1.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신청서(작성양식) 별표 2.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평가서</p>

서수정 선임연구위원 (sjseo@auri.re.kr, 044-417-9645)

염철호 연구위원 (chyoom@auri.re.kr, 044-417-9677)

여혜진 부연구위원 (hjyeo@auri.re.kr, 044-417-9840)

